

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윤태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64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5. .

발 의 자 : 윤태천 의원 외 명

1. 제정이유

-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제7조)
-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사항 (안 제8조)
-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6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(관련부서 검토의견)

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·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안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·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친환경농업” 이란 합성농약, 화학비료 및 항생제 ·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· 축산업 ·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·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· 축산물 · 임산물(이하 “농산물”이라 한다)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.
2. “친환경농산물” 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.
3. “친환경농업기술” 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·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친환경농업 실천계획) ① 시장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·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· 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(이하 “실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
2. 합성농약, 화학비료, 항생제 등 화학자재 사용 감축방안
3.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 · 보급 · 교육 및 지도 방안
4.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·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
5.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
6.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
2.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
3. 친환경농업 직불금
4. 농특산물인증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
5. 친환경농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활성화
6.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·관광사업
7.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
8.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
9.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 대상)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·영농법인 및 연구단체
2.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·보급 및 유통 사업자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

제7조(지원 절차)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, 소요경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「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
1.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
2.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
3.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

제9조(소비촉진 등) ① 시장은 안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「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

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, 소비자,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,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, 귀농·귀촌인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윤태천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8)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8조(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) ① (원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처 음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, 관내로 전입하는 <u>농업인, 귀농·귀촌인</u> 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농업인 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

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649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. 6. 18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신규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현재 우리시는 도시지역으로 판내 농촌지역이 없는 현 행정구역 체계와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친환경농업을 처음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제2항)
- “귀농·귀촌인” 삭제 (안 제10조제2항)

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
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게는 제1항
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농업인, 귀농·귀촌인” 을 “농업인 등” 으로 한다.